

〈특집〉

## 『서울대학교 法學』 50년의 회고: 세법

尹智炫\*

### I. 개관

법학의 여러 분야 중에서 상대적으로 세법은 비교적 최근에 와서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이다. 이는 세법 조문의 상당 부분이 구체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특히 법인세의 경우에는 그러한 과세표준 등의 산정이 기업회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결과, 그 동안 세법에 관한 실무가 주로 비(非)법률가에 의하여 다루어져 왔던 것에 기인한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여러 가지 사회경제 정책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세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그 헌법적 또는 법적 당위성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빈번하였던 데에서도 보듯이, 세법에 관한 각종 문제 역시 법적 관점에서 검토되고 평가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서울대학교 법학’ 역시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듯,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세법학상 중요한 논문들을 게재하여 왔고, 비록 아직 그 수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으나, 개별 논문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 즉 고정 관념을 타파하는 참신한 시각이나 법적 논증 외에도 경제학이나 역사학을 비롯한 인접 분야의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채용한 방법론상의 새로움은 뚜렷하다.

한 가지 여기서 강조하여야 할 점은 이러한 세법학에 있어서 극히 의미 있는 작업들이 1990년대 후반 이창희 교수(이하 존칭 생략, 다른 필자의 경우에도 같다)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부임과 때를 같이하여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다. 특히 조세법률주의나 엄격해석의 원칙, ‘의심스러울 때는 납세자의 이익으로’를 내용으로 하는 전통적인 세법학의 해석방법론을 새로운 시각에서 비판한 이창희의 주장은 2000년대에 들어와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세법 해석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등 세법학의 중요한 새로운 경향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실 지난 50년간 ‘서울대학교 법학’에 실린 세법 관련 논문은 모두 19편이지

---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대학원 조교수.

만, 이 중 1990년 이후에 씌어진 13편 중 12편은 모두 이창희의 것이다. 이하에서는 우선 1990년 이전에 기고된 6편의 논문을 간단히 일별하여 본 후, 그 후에 나온 이창희의 논문들의 내용을 주제별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한다.

## II. 1990년 이전의 기고작들

1. 모두 6편이 세법과 관련하여 기고되었는데, 이 중 두 편은 법과대학 소속의 경제학 교수였던 배복석에 의하여 1967년과 1977년에, 또 두 편은 최초의 세법 담당 전임교수인 이태로에 의하여 1972년과 1977년에 씌어졌고, 나머지 두 편 중 한 편은 실무가인 윤승영(당시 서울고등법원 판사)에 의하여 1972년에, 그리고 마지막 한 편은 미국 워싱턴 대(大, University of Washington) 교수인 존 휴스턴(John Huston)에 의하여 1984년에 기고되었다.

짐작할 수 있듯이, 배복석에 의하여 씌어진 두 편의 논문은 모두 법적인 논증을 담고 있는 법학논문이 아니라 경제학 또는 재정학적 방법론에 의하여 씌어진 것이며, 두 편 모두 ‘세법의 경제성장예의 적용’(1967), ‘직접과세의 경제성장예의 기여’(1977)라는 제목에서도 쉽게 알 수 있듯이 세법에 관한 문제가 경제성장예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하고 있다. 이는 경제성장예 국가의 지상과제로 삼았던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실무가인 윤승영이 1972년에 영문으로 기고한 “Illegality in Income and Deductions”는 우리나라 세법이 아닌 미국 연방세법의 해석에 관하여 씌어진 것으로서, 주로 위법한 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익이나 그러한 위법한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가 미국 세법상 소득으로 인정되거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개별 수익 또는 지출경비의 유형별로 검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한편 워싱턴 대 세법 교수인 존 휴스턴이 기고한 1984년작 “The Korea-United States Income Tax Convention”은 1979년에 효력을 발생한 한국과 미국 사이의 조세조약에 관한 기본적인 해설을 담고 있다.

2. 끝으로, 우리나라 세법학의 주춧돌을 놓은 이태로가 기고한 두 편의 논문을 살펴보자. 1972년에 실린 ‘질문검사권’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이 가지는 권한의 세법상 내용과 한계를 다루고 있다. 특히 이 논문은 말미에서, 질문

조사권이 실제로 행사되는 모습과 이에 대한 관련 당사자들의 인식에 관하여, 설문 방법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세무조사시 질문조사권에 관한 세법 규정이 현실적으로는 규범력을 가지고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인 점에 특색이 있었다.

1977년작 ‘실질과세의 원칙 - 소득의 실질적 인식을 중심으로 -’는 세법의 입법, 해석 및 적용 단계를 관통하는 가장 기본적인 대원칙인 실질과세 원칙을 그 주제로 삼고 있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납세자가 거래관계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이용 또는 남용하여 세부담을 줄인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세법의 규정이 없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하여 그와 같이 세부담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부인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른바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에 따라 그러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국가가 납세자의 행위를 그대로 용인하여야 하는 것인지를,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최근에 와서 그 중요성이 더욱 늘어만 가고 있는 주제에 대하여 시론(試論)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학문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III. 1990년대 후반 이후의 기고작

#### 1. 법학방법론에 관한 고찰

2005년에 발간된 제46권 제2호에는 ‘조세법 연구 방법론’이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다. 이 논문은 같은 호에서 기획한 ‘법학방법론’에 관한 특집의 일환으로 게재된 것이지만, 그 동안 세법 분야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론에 관한 논의, 특히 해석방법론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엄격해석의 원칙 등의 해석 ‘원칙’이 무비판적으로 통용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작지 않다. 이 글은 이러한 잘못된 경향에 대하여, 세법의 해석방법론이 다른 분야의 해석방법론과 전혀 달라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따라서 세법에 한하여 ‘엄격해석’만이 가능하다는 견해나 일부 판례의 입장은 따를 것이 못 되며 실제로 법원 스스로가 적어도 ‘엄격해석으로 일관’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결국 세법의 해석이나 나아가 입법에 있어서도 ‘효율과 공평’이 중요한 지도 원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창희 특유의 평소 지론(持論)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다는 점에 그 중요한 의의가 있다. 나아가 세법의 입법에 있어서 조세법률주의

의 내용으로서의 과세요건명확주의와 과세요건법정주의가 모든 과세요건을 법률 차원에서 상세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 것이, 오히려 세법을 더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만들었다는 비판 역시 제시하고 있다. 후자의 결론은 아래 3.항에서 살펴보는, 상속증여세에 관한 또 다른 논문의 이론적 전제 중 하나를 이루게 되기도 한다.

## 2. 소득세 또는 소득세제의 근본 원리

최근 10여 년 간 기고된 글 중 많은 부분은 역시 현행 세제 중에서도 핵심을 이룬다고 할 수 있는 소득세제와 관련되어 있고, 특히 소득세 또는 이를 내용으로 하는 세제에서 비교적 근본적인 내용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주제들에 관하여 씌어진 것이다.

### (1) 자유와 공평의 타협으로서의 소득 개념(1999년, 제40권 제2호)

소득세제의 출발점은 말할 나위도 없이 ‘소득’이라는 개념이다. 이 글은 오늘날 누구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소득에 대한 과세’가 생각보다 그리 오래된 개념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소득’이라는 개념은 논리적으로라기보다는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것으로서 의외로 불안정한 개념이며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다는 점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은 소득세제 하에서 소득에 대한 과세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개인의 부(富)의 증가에 대하여 빠짐없이 과세하여야 한다는 ‘공평’의 요구와 국가가 과세를 위하여서라고는 해도 개인의 생활을 구석구석 들여다보는 것은 곤란하다는 ‘자유’의 이념이 충돌하는 장(場)임을 설명하고, 현재 각국이 채택하고 있는 소득세제가 바로 이러한 자유와 공평 간 타협의 결과임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 (2) 소득세제의 이론적 기초(2001년, 제41권 제4호)

이 글은 소득의 개념에 관한 위 (1)항의 글에 이어 소득세제와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을 다루면서, 소득에 대한 과세의 근본이념은 기본적으로 공평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과 그러한 이념은 누진세율의 채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세제가 이념형으로서의 소득세제로부터 벗어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다른 한편으로 소득세제가 그 대안으로 제시되는 소비

세제와 비교하여 볼 때 과연 우월한 것인지 여부 등 소득세제의 근본 줄기에 관하여 이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몇몇 문제들에 관하여 논하고 나름대로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소득세와 소비세 간 우열에 관한 논쟁은 지난 수십 년간 미국에서는 실제로 학자들 간에서 극히 치열하게 전개되어 온 바 있는데, 이 글은 우리나라 세법학계에서는 보기 드물게 이 논쟁에서 제시된 핵심적인 논의들을 상세하면서도 비판적으로 소개하는 한편, 단순한 소개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그러한 논의들이 가지는 현실적인 의의에 대한 필자의 독자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학문적 가치가 매우 높다.

(3) 조합 및 회사의 설립과 자본출연 - 세법의 시각에서 본 법인격의 의의  
- (2002년, 제43권 제1호)

이 논문은, 글의 제목 스스로가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조합과 회사로 대변되는 현실세계에서의 기업 형태와 관련하여 그 설립 및 자본의 출연에 대하여 세법이 주고 있는 법률효과의 내용을 분석 및 비교하고, 그러한 법률효과의 차이를 결과한 원인인 ‘법인격’이라는 개념이 과연 세법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에 관하여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고찰을 시도한다. 특히 법인격의 존부와 법인세의 부과 여부를 논리 필연적으로 결부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 논문의 결론은 2008년 개정되고 2009년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이 동업기업 세제를 도입하여,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는 인적 회사에 대하여도 법인세를 부과하는 대신 이른바 ‘도관세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현실 세제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바가 되었다.

(4) 주식배당과 과세(2001년, 제41권 제4호)

‘주식배당과 과세’는 상법학자인 김건식과의 공동 작업 하에 씌어진 것이며, 그 중요한 논점은 방금 살펴본 ‘세법의 시각에서 본 법인격의 의의’에서 제시된 바와 같은 선상에 놓이는 것이다. 즉 주식배당이라고 하는 현상에 대하여 배당을 받는 주주들에게 소득세를 물릴 것인가 하는 논점은 기본적으로 법인세란 무엇인가, 이미 법인세를 부담한 법인의 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주주들에게 이루어지는 배당에 대하여 다시 소득세를 물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물음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보다 폭 넓은 문제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동시에 우리나라의 특수한 기업 현실과 이를 연관시켜 주식배당에 대하여 소득

세를 물리는 세제의 당위성 여부를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 그 학문적 의의가 있다.

#### (5) 기업구조조정과 미실현이익 과세(1997년, 제38권 제3, 4호)

이창희가 ‘서울대학교 법학’에 실은 일련의 연구업적 중 최초의 것인 이 글은 기업 내에 축적된 미실현이익과 관련하여, 흔히 ‘구조조정’이라고 불리는 유형의 거래들이 이러한 미실현이익의 과세제기가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미실현이익 과세 문제가 구조조정 거래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인가에 관한 논의의 기본적 틀을 제시한다. 기본적으로 법학적 견지에서만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기 힘든 거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하나의 시론을 제시하는 데에 그친 글이지만, 새로운 세제가 도입될 때에는 그것이 기본적인 과학적 분석을 거친 다음이어야 한다는 것, 그렇지 않고(흔히 현실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는 않지만) 충분한 과학적 검토를 거치지 않은, 어떤 정치적, 또는 경제적 세력의 선동적 구호에 휘둘려서 이런저런 세제를 함부로 도입하는 것은 극히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당시의 맥락에서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사실 이 글의 이러한 논지는, 우리나라가 최근 두 차례의 정권 교체를 거치면서 경험한 사태, 즉 세제가 특정 정치세력의 정책목표를 뒷받침하는 주요 수단으로 사용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과학적 논의 대신 여론몰이식 선동을 통한 급격한 방향전환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결과적으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경제 주체들의 합리적 의사 결정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볼 때, 더욱 강한 설득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 3. 상속증여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에 실린 세법 관련 논문 중 상속증여세 분야에 관한 것은 제 44권 제4호(2003년)에 실린 ‘상속세 및 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의 한 편뿐이지만, 이 글이 갖는 학문적 또는 현실적 의의는 매우 크다.

흔히 ‘재벌’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의 대기업집단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 이후의 일이지만, 특히 1980년대 이후에 와서 이들 재벌 기업들의 경영권이 창업주 또는 그에 준하는 세대로부터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상황이 흔하여지게 됨에 따라, 이와 같이 경영권을 승계하는 자들에 대한 상속증여

세의 부담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재벌 기업들은 이러한 상속증여세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경영권의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각종 거래구조를 생각해 내게 되었고, 그 결과 상속증여세 분야는 우리나라에서 세부담을 절감시키기 위한 ‘계획적 거래구조 설계’(흔히 ‘tax planning’이라 불리는 행위)가 가장 발달한 분야가 되었다. 각종의 기발한 거래구조를 통하여 상속증여세의 부담 없이 대기업의 경영권을 포함하여 거액의 부가 창업주 이후의 세대에 승계되는 현상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거래구조를 사전에 예측하여 입법에 반영함으로써,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공정하다고 믿는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지자, 정치권에서는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불확정개념을 사용하여 증여세의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게 되었고, 이러한 방안은 흔히 ‘완전포괄주의’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한편 이러한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함에 있어서 중요한 이론적 어려움 중 하나는, 국민의 예측가능성이나 법적 안정성의 보장을 위한다는 이유 하에, 과세요건의 규정에 있어서 불확정개념의 사용을 억제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인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환경의 변화로 완전포괄주의 입법이 집권세력의 주요 정치 ‘아젠다’로서 등장하는 상황에 이르자,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입법을 통하여, 그 입법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조세법률주의 및 이에 관하여 확고하게 형성되어 있던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저촉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되었다. 완전포괄주의 입법을 실무적으로 추진할 책임을 맡은 당시 재정경제부는 서울대학교의 성낙인(헌법), 박정훈(행정법), 이창희(세법), 세 사람의 교수에게 이러한 방안의 수립 및 형성에 관한 자문을 구하였고, 이들 3인은 2003년 10월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에 관한 ‘용역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모두(冒頭)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이 글은 이 용역보고서 전문(全文)을 그대로 옮겨 실은 것이다.

이 글은 완전포괄주의 입법의 당위성을 밝히고 구체적인 법 조문의 정비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끝으로 이러한 입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것이 아님을 논증하고 있다. 이 보고서가 나온 후에 실제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 글의 기본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고 이 때에 형성된 완전포괄주의의 기본 틀은 그로부터 5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별다른 변동 없이 그대로 운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글은 현실적인 입법 수요를 학계가 뒷받침하여 실제의 입법으로 연결된 중요한 사례로서도 그 의의가 자못 무겁다고 하겠다.

#### 4. 국제조세 분야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주로 소득세제와 관련된 논문이 실렸던 데에 반하여 2007년 이후에는 일련의 국제조세와 관련된 논문들이 기고되었다.

##### (1) 과소자본세제의 현황과 전망(2007년, 제48권 제4호)

일련의 국제조세 관련 논문 중 최초의 것인 이 글은 법인의 생산원천이 되는 자본 중 자기자본과 타인자본(부채)의 기본적인 구별을 전제로 하는 각국의 현행 법제가, 외국인의 내국법인 설립이라는 맥락 하에서 어떻게 국가의 과세권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반대로 이러한 경우 자국의 과세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각국이 시행하고 있는 과소자본 세제가 어떻게 나라들 간에 맺어진 조세 조약의 내용과 충돌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나아가 이를 토대로 하여 현재의 과소자본 세제가 과연 앞으로 어떠한 길을 걸어갈 것인가에 관한 필자의 예측을 담고 있다.

현재의 사회과학적 지식 하에서 가뜩이나 어떤 것이 정답인지 알기 어려운 것이 세금의 문제일진대, 그러한 어려움이 나라 간의 이해충돌이라는 국제법적 맥락 하에서 더욱더 가중된다는 점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국제조세의 온갖 문제 가운데에서도 이 문제는 그저, 世界共榮의 이념과 각 국의 國家利益, 世界化와 國粹主義, 합리적 政策과 비합리적 政治가 뒤엉킨, 그야말로 稅法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는 점을 들고 싶을 뿐이다.”라는 이 글의 마지막 문장은 세법학이 가지는 과제와 한계를 그야말로 극명하게 요약한 명문(名文)이다.

##### (2) 전세계소득 납세의무와 조세조약상 거주자 개념(2008년, 제49권 제1호)

이 논문은 조세조약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주자 개념과 그러한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전(全)세계소득(worldwide income) 개념의 역사적 연원을 탐구한다. 우리나라 실정법상의 거주자 개념이나 소득세법상의 전 세계소득의 과세범위 등에 관하여는 거의 언급하지 않은 채, 보다 근본적인 시각에서 조세조약에서의 거주자 개념이 어떻게 하여 전세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라는 입법태도와 역사적으로 결부되어 왔고, 또 그와 달리 이른바 ‘속주주의’를 취하는 나라에서는 이러한 거주자 개념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가를 논하고 있는 이 글은, 우리나라의 세법학이 이제 우리나라 실정법의 해석론 또는 입법론을 넘어서, 국제조세의 일반원리라고 부를 수 있는 차원의 문제에까지도



관심범위를 서서히 뻗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3) 세법상 속인주의와 속지주의의 대립(2009년, 제50권 제1호)

이 글은 바로 직전 논문에서도 논의의 대상이 되었던, 국제조세에 있어서 속인주의와 속지주의의 대립이라는 문제가, 해외투자자가 설립한 내국법인, 또는 내국법인의 해외자회사라는 맥락 하에서 일으키는 특수한 문제에 관하여 언급한다. 이 글은 또한 거슬러 올라가보면 2002년에 나온, 세법에서 법인격이 가지는 의미에 관하여 씌어진 또 다른 논문(위 2. (3)항 참조)에서의 쟁점과도 연결되어 있다. 즉 많은 나라들이 거주자에 대해서는 전세계소득을 과세한다는 일반 원칙을 받아들이면서도 막상 그러한 거주자가 외국에 별도의 법인격체를 설립하여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일견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과연 어떻게 하여 출현하게 된 것이고,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가에 관한 분석을 시도한다. 워낙 독창적인 문제 제기이기에 기존의 연구 성과가 세계적으로도 거의 전무한 데다 문제의 성질상 명확한 결론에 쉽게 이르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현재의 상황이 결코 경제적 효율성의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상황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국제조세라고 하고 있는 분야가 기본적으로 안고 있는 이론적 불안정성과 결부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이 논문이 가지는 학술적 가치는 매우 높다. 그리고 아마도 향후 이 문제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이 글을 출발점으로 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고 감히 예상하여 본다.

## 5. 기타

부가가치세에 관한 논문으로는 제43권 제3호(2002년)에 실린 ‘금융보험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한 편이 존재한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이른바 ‘일반소비세’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서 ‘면세’로 규정되어 있는 재화와 용역이 존재한다. 금융보험업도 이러한 면세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데, 이 논문은 그러한 면세의 이유에 관하여 기존에 제시되어 있던 잘못된 견해를 비판하고, 금융보험업을 면세로 하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져본 후, 그러한 면세의 ‘취지’에 따라 구체적인 면세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 것이 효율과 공평을 증진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필자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진지

한 연구가 흔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분야에서는 보기 드문 연구성과라 하겠다.

#### IV. 맺음말

지금까지 지난 50년 동안 ‘서울대학교 법학’에 실린 세법 관련 논문들을 개관하여 보았다. 세법학 자체의 역사가 워낙 일천한 까닭에 다른 분야에 비한다면 게재된 글이나 글을 게재한 필자의 수가 비교적 작은 것은 사실이지만, 1960~70년대에 나온 선구적인 글들에서부터 1990년대 이후에 나온 본격적인 학문적 성과에 이르기까지 ‘서울대학교 법학’이 세법학의 발전에 기여한 성과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특히 최근 10여 년 간 세법과 관련하여 실린 논문의 양과 질은 비약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겠다.